

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

제출년월일 : 2000. 2. 18

제 출 자 : 유 동 찬 의원

1. 수정이유

- 수렵장 사용료를 조수보호관련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성격이 아닌 적립금으로 적립 관리하기 위함

2. 주요 골자

- 수렵장사용료등의 수입금을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관리

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순환수렵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6조의2 (사용료등 수입금의 적립 및 관리) 수렵장 사용료등의 수입금은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적립금으로 적립 관리한다.

안 제6조의3을 삭제한다.